

육아

① 육아휴직

휴직

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.

급여

육아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%(상한 100만원/하한 50만원)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.

※ 월 육아휴직급여의 25%는 휴직 복귀 후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경우 일괄 지급

아빠의 달

동일한 자녀에게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1개월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%(최대 150만원)을 지원합니다.

② 육아시간(수유시간) 허용

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
“시간선택제 일자리”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.



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

시간선택제 일자리 | 출산휴가 | 육아휴직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번) 또는 홈페이지(www.moel.go.kr)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

시간선택제 일자리 | 출산휴가 | 육아휴직



임신·출산



① 출산전·후 휴가

휴가

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,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※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120일 부여

급여

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(통상 임금 100%)으로 하여야 하고, 국가는 무급 30일을 지원합니다.

※ 단, 국가에서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급(월 135만원 한도)받은 경우 그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함

※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유산·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

② 배우자 출산휴가


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 (최초 3일 유급휴가)

※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함

③ 태아 검진시간 허용



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.

- 임신 28주까지 : 4주마다 1회
-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: 2주마다 1회
- 임신 37주 이후 : 1주마다 1회

※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

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취업



육아·돌봄·퇴직준비 등을 이유로
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무가 아닌
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일자리로
취업할 수 있습니다.

※ 무기계약, 사회보험 가입 등

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정보



- 각 지역 고용센터(취업지원 상담)
- 시간선택제 전용워크넷
www.work.go.kr > '시간선택제 일자리'

사업주 지원



- 임금의 50%를 1년간 지원
(월 80만원 한도, 대기업은 월60만원 한도)
- ※ 시간선택제 신규창출제도에 참여하여 승인받은
사업장에 한함

※ 2016년 지원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단축



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**개인적인 사유** 발생
(임산, 육아, 학업, 퇴직준비, 건강, 가족돌봄 등)으로
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
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.

※ 전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.

① 시간선택제 전환

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대상 | 모든근로자
•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참여하여 승인
받은 사업장에 한함 |
| 사업주
지원 | • 전환장려금 월 12~20만원
• 간접노무비 월 20만원(중소·중견기업)
1년간 지원
•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50%를 지원
(중소·중견기업 월 60만원 한도, 대기업은
월 30만원 한도) |

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대상 | 임신 중인 근로자
•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참여하여 승인
받은 사업장에 한함 |
| 사업주
지원 | • 전환장려금 월 20만원
간접노무비 월 20만원(중소·중견기업)
1년간 지원
•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50%를 지원
(중소·중견기업 월 60만원 한도, 대기업은
월 30만원 한도) |

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대상 |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|
| 근로자
지원 | 줄어든 임금의 60%, 1년(50~150만원) |
| 사업주
지원 | 월 20~30만원, 1년
• 대체인력 채용 시 채용기간 동안 월 60만원
(대기업은 30만원) 추가 지원 |

④ 장년 근로시간 단축

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 | 만 50세 이상 근로자 |
| 근로자
지원 | 줄어든 임금의 50%(월 90만원 한도, 2년) |
| 사업주
지원 | 월 30만원, 2년 |

대체인력 지원금



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시간선택제 전환
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**사업주**에게
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- ◎ 시간선택제 전환, 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대체인력 인건비의 50% 지원
중소·중견기업 월 60만원,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



정보 더하기

대체인력 뱅크

대체인력 풀 모집 및 교육
대체인력뱅크에 구직 등록 시 무료로 맞춤교육
실시 등 채용관리 서비스 제공

일자리 매칭

대체인력 수요 발생 시 온-오프라인 취업 알선
<http://대체인력뱅크.com> ☎ 1577-0221